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4일, 황정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 6.)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황정아의원)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 규정 위반행위 등의 발생 시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역무 제공 거부 등의 미조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그로부터 얻는 불법적인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제50조의10 및 제77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과징금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제50조의4 제4항 위반이 정보통신망법상 유일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바,

제50조의4 제4항 위반으로 획득한 이익이 정보통신망법상 타 위반행위로 획득한 이익에 비해 그 규모나 환수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고, 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보임.

- 또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과징금 부과 of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